

[단독] 지난 석달 당신의 차량 이동경로, 경찰은 볼 수 있다

[한겨레]

박태우 기자

경찰 ‘도로 위 실시간 사찰’ 논란

문자·숫자 2개만 입력 ‘유사 검색’
 수배 차량과 비슷한 번호 좌르르
 ‘저인망식’ 수사·마구잡이 조회 우려
 특정한 사찰 도구로 쓰일 수도
 경찰 “인권침해 최소화 논의 중”
 “감시국가 다를 바 없어” 비판 일어

경찰청이 구축한 ‘수배차량 검색 체계’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운영하고 수사기관이 사후 수사에 활용하던 차량 방범용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한곳에 모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입 취지만 보면 경찰이 최근 강조하는 ‘수사 골든타임 확보’에 적합한 시스템으



로 보이지만, 지자체 폐회로텔레비전에서 수집한 불특정 차량 전체의 정보를 ‘제3자’인 경찰청이 실시간 전송받아 활용하는 것을 두고 오·남용 우려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 같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수사 목적이기 때문에 현행법을 어긴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 하지만 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변호사는 “범죄가 발생하기 전부터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경찰이 실시간으로 전송받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는 현행법 취지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범운영 중단 이후 법적 근거와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한 내부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이르면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배차량 검색 체계의 대략적 윤곽은 안전행정부의 ‘문제차량 지능형 검색 및 검거 시스템’ 시범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5월부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중인 서울의 한 자치구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자치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시스템에 접속해 특정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이 지나간 이동경로가 지도에 자동으로 표시되고 카메라에 찍힌 동영상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자치구에서 차량방범용 카메라 289대가 찍어 보관하는 차량번호는 한 해 700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식별이 용이한 번호판을 인식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의 위치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셈이다.

경찰의 수배차량 검색 체계는 이 자치구 시스템의 ‘전국 확장판’이다. 경찰 시스템은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차량방범용 카메라 5929대가 인식한 차량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최소 석달간 보관하도록 설계돼 있다. 2010년 강원경찰청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1차로 시스템을 구축한 충남·충북·경기경찰청 관할 지역, 서울의 일부 자치구는 이미 이런 차량정보를 경찰청으로 실시간 전송하고 있다.

특히 ‘긴급 수배’의 경우 차량번호판의 문자나 숫자 가운데 2개만 입력해도 ‘유사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수배 차량 번호와 비슷한 번호의 차량을 갖고 있다면 누구라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경찰은 수배중이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추적한다며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특정 지명을 검색한 일반 시민들의 개인정보까지 무작위로 들여다본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별다른 통제·안전장치 없이 수배차량 검색 체계가 공식 운영에 들어갈 경우 ‘저인망식’ 수사나 마구잡이 조회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인의 뒤를 캐는 강력한 사찰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명확한 관련

법규도 없이 일반 시민들의 차량 이동정보를 통째로 수집하는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감시국가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기사등록 : 2014-10-26 오후 08:08:28 | 기사수정 : 2014-10-26 오후 09:40:04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프린트하기